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박주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3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3. 21.

발의의원 : 박주용 의원,

전홍배 의원, 이연숙 의원

1. 제안이유

많은 지자체에서는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을 돕다 피해를 입은 주민을 예우 및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숭고한 뜻을 기리고 있음.

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피해를 입은 주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정의 실현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적용대상과 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나. 의로운 군민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8조)

다. 인정과정과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9조~제13조)

3. 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(붙임)

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위해(危害)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예우와 지원을 하여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“의로운 군민등”이란 제2호에서 정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, 대구광역시 달성군민(이하 “군민”이라 한다)이나 그 밖의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로운 군민등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.

2. “의로운 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
가.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, 절도, 폭행,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는 행위

나. 자동차, 열차 그 밖의 승용물의 사고 또는 그 밖의 이유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는 행위

다. 수난(水難)이나 그 밖의 천재지변, 화재, 건물·축대 및 제방의 붕괴 등(이하 이 목에서 “수난등”이라 한다)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특정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거나 수난등으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, 신체 또는 재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를 하는 행위

라. 야생의 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는 행위

마.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·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는 행위

3. “부상 “이란 제2호의 의로운 행위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의 상처를 말하고, ” 피해”란 그로 인하여 입은 신체상 손해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대상과 범위) 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유족(이하 “가족 등” 이라 한다)으로 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(이하 “군” 이라 한다) 관할구역 내·외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행위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

2. 군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행위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사람

② 제1항에 따른 가족 등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형제, 자매로 한다.

제4조(의로운 군민등 심사위원회 설치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등 심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1.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및 인정취소에 관한 사항

2. 의로운 군민등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

3. 의로운 군민등과 그 가족 등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의로운 군민등과 그 가족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수(이하 “군수” 라 한다)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

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(이하 “부위원장”이라 한다)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, 당연직 위원은 의로운 군민등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, 안전 관련 업무 담당국장, 보건소장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.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에 있어서는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5조를 준용한다.

1.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(이하 “군의회”라 한다)에서 추천하는 1명
2. 복지, 의학, 법률, 재해 및 응급구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
④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수가 구성하며, 해당 안전의 심의절차의 종결 시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.

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의로운 군민등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.

⑥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군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,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장 등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(開議)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의 이해관계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, 진술, 자문, 조사, 연구,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과 관련한 사항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하여야 한다.

제8조(해촉)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사망, 질병,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
3.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

제9조(인정신청 등) ① 이 조례에 따라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을 받고

자 하는 사람은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·면장 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의로운 군민등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읍·면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제출하여 의로운 군민등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.

③ 읍·면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에서 의로운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제출하여 의로운 군민등 인정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.

④ 제1항에 따른 신청과 제3항에 따른 청구는 의로운 행위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

⑤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의로운 군민등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제10조(결정통보 등) ①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른 결정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청구한 읍·면장을 거쳐 제9조제1항의 신청인, 제9조제3항의 의로운 군민등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보서로써 통지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제9조제5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등으로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의로운 군민등 본인이나 그 가족 등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의로운 군민등 증서를 내줄 수 있다.

제11조(위로금의 지급신청) 위로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제9조제1항에 따라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12조(위로금의 지급)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단,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로 심사·의결된 사람 또는 의사자 가족 등이 제11조에

따라 위로금 지급신청을 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사망한 의로운 군민등의 가족 등에 대한 위로금 : 1천만원 이하
2.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등에 대한 위로금 :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 별표 1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금액

가. 제1급 ~ 제2급 : 5백만원 이하

나. 제3급 ~ 제4급 : 3백만원 이하

다. 제5급 ~ 제6급 : 2백만원 이하

라. 제7급 ~ 제9급 : 1백만원 이하

② 위로금은 의로운 군민등이 생존해 있는 경우는 그 본인에게, 의로운 군민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가족 등 중 배우자, 자녀, 부모, 조부모, 형제자매의 순으로 지급하되, 그 가족 등 중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때에는 위로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한다.

③ 태아는 제2항에 따른 지급 순위에 있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.

제13조(예우) 군수는 의로운 군민등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.

1.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
2.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 등의 예우
3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

제14조(인정 취소 등) ① 군수는 의로운 군민등으로 인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정의 취소결정을 할 수 있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로운 군민등으로 인정된 경우
2. 제9조제5항에 따른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결정 전 범한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

3.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등의 인정 취소결정을 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을 환수하고, 제13조에 따른 예우도 취소한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로금을 환수하는 경우 위로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.

제15조(기록보존) 군수는 의로운 군민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한 인적 사항, 공적내용, 예우 및 지원내역 등의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 및 특례) ① 이 조례는 시행 후 의로운 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.

② 군수는 군민이 이 조례 시행 전 의로운 행위를 하고 이 조례 시행 전 1년 내 및 시행 후 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률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심사·의결된 경우 그 및 그의 가족 등에게 이 조례에 따라 위로금의 지급 및 예우를 할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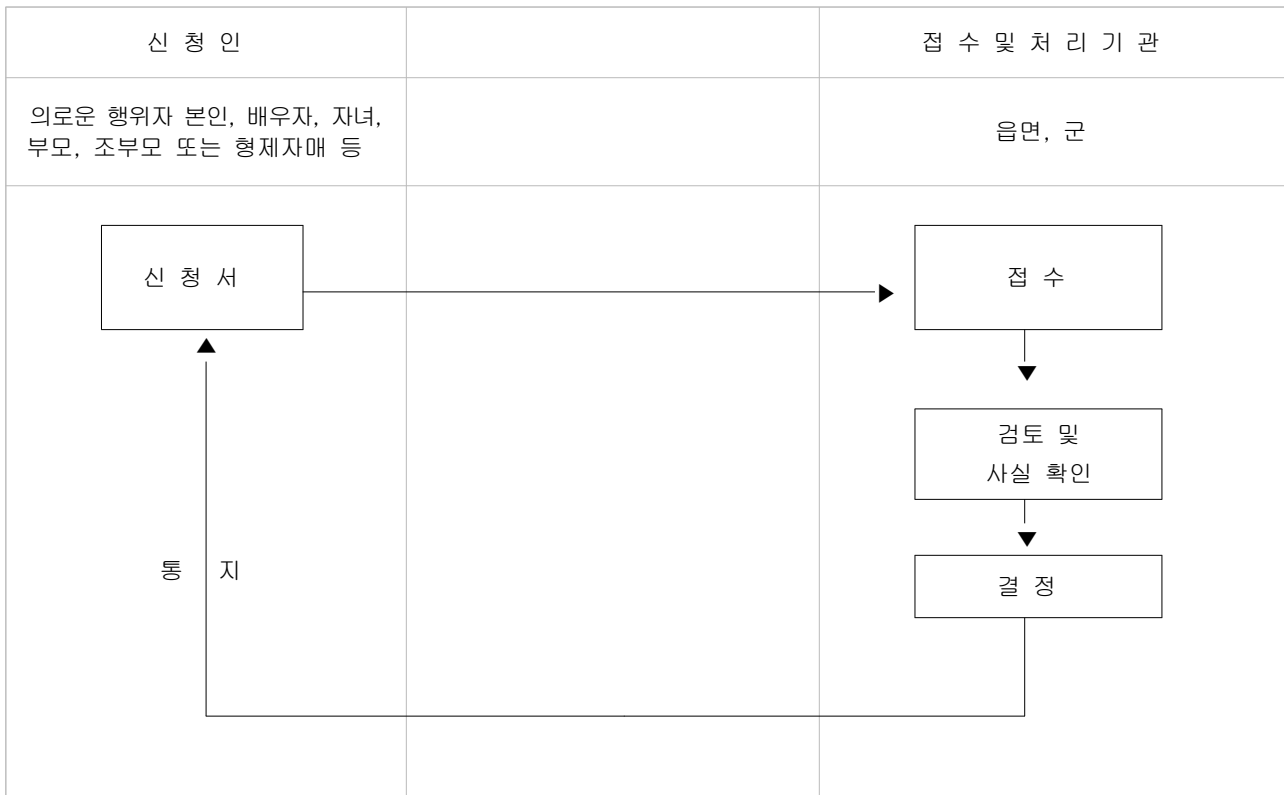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 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[별지 제2호서식]

의 로 운 군 민 등 사 실 확 인 조 사 서

의 로 운 군 민 등 사 실 확 인 조 사 서				
의 사 상 행 위 자	성 명		생년월일 (외국인등록번호)	
	주 소	(전화 :)		
사고내용 확 인 (6하원칙)	발생일시		발생장소	
의로운군민등 추천사유				
조 사 자	직 위	성 명	① (전화 :)	
확 인 자	직 위	성 명	① (전화 :)	
<p>위 사람은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회 및 현지 조사결과 의로운 군민등 대상자임을 확인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○○읍면장 (직인)</p>				

[별지 제3호서식]

의로운 군민등 인정결과 통보서

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 10조제1항에 따라 의로운 군민등 인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달 성 군 수 (인)

(의로운 군민등 인정 신청인) 귀하

의 로 운 군 민 등 인 정 신 청 내 용

신청인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의로운 행위자와의 관계	
의로운 행위자 (심사 대상)	성명		생년월일	
	주소			

의 로 운 군 민 등 인 정 결 과

심사위원회	20 년 제 차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등 심사위원회
인정결정일	20 년 월 일
인 정 결 과	

제 호

의 로 운 군 민 등 증 서

성 명 :

주 소 :

생 년 월 일 :

위 사람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였기에 그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사회의 귀감으로 삼기 위하여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의 규정에 따라 의로운 군민등으로 결정하고 이 증서를 드립니다.

년 월 일

달 성 군 수 (직인)

※ 내용은 사건에 따라 적이하계 변경 사용

□ 「지방자치법」(2024. 1. 9. 타법개정, 2024. 5. 17. 시행)

제28조(조례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.

제30조(조례와 규칙의 입법한계) 시·군 및 자치구의 조례나 규칙은 시·도의 조례나 규칙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.

**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의로운 군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
조례안」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**

1. 재정수반요인

- 의로운 군민등 심사위원회 운영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인정신청에 결정여부에 따른 위로금 지급등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(안 제4조제6항 및 제11조~제12조)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(제3조제2항제1호)

3. 미첨부 사유

- 심사위원회 운영비용 및 위로금 지급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예상됨 (안 제4조제6항 및 제11조~제12조)

작 성 자

소 속 및 직 위

달 성 군 의 회 의 원

성 명 (연 락 처)

박 주 용 (☎ 2292)